

[특별공급_서류제출 안내 I]

■ 제출기한 (※ 반드시 홈페이지 방문예약 후 예약시간을 준수하시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예약 시간 외 입장이 불가합니다.)

[2021.07.14(수) ~ 07.20(화) 7일간 (10:00 ~ 16:00)]

■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

서류 구분	참고
신분증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주민등록표등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주민등록표초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가족관계증명서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※ 필수 혼인관계증명서	• 만30세 이전 혼인한 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: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별공급 : 혼인신고일 확인 •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출입국사실증명서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군복무확인서(재직증명서)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

※ 본인 외의 자가 서류제출시(배우자 포함) 본인 및 제출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.

■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_[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]

서류 구분	참고
출입국사실증명서 (배우자, 세대원)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(주민번호 전체 표시)
주민등록표초본 (직계존속)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가족관계증명서 (자녀)	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한부모가족증명서 (본인)	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
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(본인 또는 배우자)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-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질병코드번호, 출산예정일,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(본인 또는 배우자)	•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 비치)
입양관계증명서 (본인 또는 배우자)	• 입양의 경우 (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)
출입국사실증명서 (배우자, 세대원)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(주민번호 전체 표시)
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(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)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(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)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(배우자 분리세대 포함) (2020.01.01. 이후 내역)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Fax 수신 문서 가능)
소득증명서류 (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)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명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·비속의 소득증명서류) ※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,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
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(본인 또는 배우자)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-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질병코드번호, 출산예정일,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(본인 또는 배우자)	•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 비치)
입양관계증명서 (본인 또는 배우자)	• 입양의 경우 (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)
비사업자확인각서 (해당자)	•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(견본주택 비치)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1.06.24.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상기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서식은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, 혼돈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질의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특별공급_서류제출 안내 II]

■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_[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]

서류 구분		참고
노부모부양	출입국사실증명서 (부양가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* 해외에 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 -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*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*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출입국사실증명서 (배우자,세대원)	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(주민번호 전체 표시)
	주민등록표초본 (피부양 직계존·비속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생애최초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본인 및 성년인세대원 전원)	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(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)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(배우자 분리세대 포함) (2020.01.01. 이후 내역)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Fax 수신 문서 가능)
	소득세납부증서 (본인)	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, 하단 표 참조
	소득증빙서류 (본인 및 성년인세대원 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·비속의 소득증빙서류) [생애최초특별공급운용지침 별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] 또는 하단 표 참조 ※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,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
	주민등록표초본 (직계존속)	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비사업자 확인각서 (해당자)	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(건분주택 비치)
부적격 통보된 받은자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·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가격확인서 등)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당첨사실 소명 서류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■ 대리인 접수시

서류 구분		참고
대리인 제출시 추가서류 (본인외 모두 제3자)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도 :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※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
	위임장	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(건분주택 비치)
	대리신청인 신분등 및 인장(서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1.06.24.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 ※ 상기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[특별공급_서류제출 안내 III]

■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적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(직인날인))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②,③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 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“주(현)”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명세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반드시 제출	① 세무서
	금년도 신규사업자 (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등)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※ 표준(기준)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 (매출액-매입액)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,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 세무서,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※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	①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명세서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별도서식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	① 접수장소	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 서류

해당여부	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생애최초 특별공급	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	해당직장 / 세무서
	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	
	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(2020.06.24.~2021.06.24.)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	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본(납부내역증명 포함) ※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	
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※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/ 세무서

■ 견본주택(모델하우스)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53

※ 본 서식은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, 혼돈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질의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